

의안번호 제164호

2022년도 (재)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1. 10. 14.

2022년도 (재)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164호

제출연월일: 2021. 10. 14. 제 출 자: 논산시장

제안설명자: 평생교육과장

1. 제안이유

○ 자유학년제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, 진로체험,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청소년 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「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」에 출연하고자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출연개요

- O 설립근거
 - 「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제2조
- O 출연근거
 - -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
 - 「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제4조
- O 출연기관: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
- O 설립형태 : 비영리 재단법인
- O 설립일: 2019. 11. 22
- 출 연 금 : 2,708,715천원 (2022년도 본예산)
 - ※ 2021년도 출연금 : 2,560,220천원 (본예산 기준)
- O 출연방법 : 현금출연

O 2022년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인건비	운영비 사업비		비고
계	2,708,715	1,021,613	806,827	880,275	
법인사무국	717,455	369,041	348,414	1	
청소년 문화센터	1,018,742	449,703	376,009	193,030	
청소년 상담복지센터	345,398	202,869	82,404	60,125	
논산형 청소년정책사업	627,120	-	-	627,120	

^{※「2022}년도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(행정안전부, 2021.6.)」에 따라 편성

3. 주요사업

- O 청소년 체험·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
- O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·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- O 청소년을 위한 복지·보호·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O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 연계사업
- O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 및 사업
-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
- O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논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- 4. 청소년 시설현황 : [붙임 1]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[붙임 2]

붙임 1 청소년관련 시설현황

● 청소년문화센터

Ⅱ 기관현황

O 위 치: 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

○ 개 관 일 : 2000. 5. 9.

○ 설립근거 :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O 건 립 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국 비	도 비	시 비	비고
합 계	4,204	2,280	660	1,264	
시설건립비	3,904	2,280	660	964	
부지매입비	300	-	_	300	

O 주요연혁

- 1998. 02. 16. : 청소년수련시설 허가

- 1998. 03. 06. : 착공

- 1999. 10. 20. : 청소년수련시설 등록

- 1999. 11. 01. : 준공

- 2000. 04. 20. : 학교법인 성령학원(한민대) 위탁운영 (2002.12.31까지)

- 2000. 05. 09. : 청소년수련관 개관

- 2003. 01. 01. : 학교법인 건양학원(건양대) 위탁운영 (2008.12.31까지)

- 2006. 03. 01. 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개시

- 2009. 01. 01. : 논산시 직영 개시

- 2014. 09. 29. : 청소년활동 유공기관 표창 (충청남도지사)

- 2016. 11. 19. : 충청남도 청소년참여대회 우수 (충청남도교육감)

- 2017. 12. 22. :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(국무총리 표창)

- 2018. 12. 31. : 청소년자원봉사 우수기관 선정 (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원)

- 2019. 05. 01. :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시설명 변경

- 2019. 07. 25. : 전국 매니페스토 청소년문화정책 최우수상 수상

- 2019. 12. 13. : 청소년포상제 우수 운영기관 선정 (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원) * 2013~18년. 6년 연속 방과후아카데미 우수기관 선정 (여성가족부)

- <u>2020. 01. 01. : (재)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출범</u>

- 2020. 01. 03. :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'최우수' (여성가족부)

- 2020. 10. 15. : 충청남도 청소년우수기관 표창 (충청남도지사)

2 시설현황

○ 시설규모 : 부지 4,958㎡, 건축면적 3,995㎡(지하1층, 지상3층)

O 주요시설

층	별	면적(m²)	주요시설	비고
계 3,995.55		3,995.55		
지 (문호	-	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		494평
	1층 989.44 문화센터사무실, 상담복지센터사무실, 개인,상담실, 집단상담실,실내체육관(150평)		299평	
지상	2층 492.64 교육강의실, 방과후교실2, 운영위원회실, 법인사무실, 대표이사실		149평	
	3층	881.47	극장(73평,132석), 강당(82평), 미술실, 미디어실	266평

③ 운영현황

O 운영인력

구 분	계	운영대표	팀 장	주 임	사 원	기간제	비고
정 원	13명	1	2	1	5	4	
현 원	13명	-	2	_	7	4	

※ 운영대표: 문화센터 활동팀장 겸임(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대표 자격 보유)

O 연도별 이용현황

연도별 누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(8월말 기준)
349,112명	80,092명	80,601명	80,675명	81,629명	15,619명	10,496명

❷ 청소년상담복지센터

1 기관현황

O 시 설 명 :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

O 위 치 : 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 1층

O 설립일: 1994. 5. 14

○ 설립근거 :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O 주요연혁

- 1994. 05. 14. : 개 소(논산시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 위탁)

- 2002. 11. 20. : 우수 청소년상담실 선정 표창(문화관광부장관)

- 2011. 01. 01. : 논산시 직영 개시

- 2011. 07. 01. : 논산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사업개시

- 2014. 02. 03. :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사업개시

- 2014. 08. 30.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및

논산시 청소년 진로·직업박람회 개최

- 2016. 11. 25. :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우수기관 표창(여성가족부장관)

② 운영현황

O 운영인력

구분	계	센터장	팀 장	주 임	사 원	동반자 (기간제)	비고
정 원	10명	1	2	2	3	2	
현 원	9명	-	1	1	5	2	

※ 센터장: 전임센터장 채용 예정

O 연도별 상담실적 현황

연도별 누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(8월말 기준)
167,908명	42,034회	42,872회	45,113회	22,770회	7,077회	8,042회

붙임 2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
-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
-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-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설립 목적
 - 2. 주요 업무와 사업
 -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-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제2조(설립) ①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(이하 "재단" 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,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논산시는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